

의안번호	2202846
의 퇴 인	권칠승의원
회 답 일	2024.11.11.
추 계 번호	24D285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개정안에 따라 국내 정착금 지급 대상에 독립유공자의 증손자녀 및 고손자녀의 세대주를 추가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681억 4,900만원, 2030년 22억 8,800만원 등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총 773억원(연평균 154억 6,000만원)으로 추계됨

[표 1]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2026	2027	2028	2029	2030	합 계	연평균
국내 정착금 지급(안 제26조)	68,149	2,288	2,288	2,288	2,288	77,300	15,460

주: 추계에서는 국가보훈부의 '독립유공자 후손확인위원회'를 통하여 독립유공자 후손으로 인정받은 인원을 개정안에 따른 대상자로 하였으며, 과소추계의 가능성이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26조(국내 정착 지원에 관한 특례)	일제강점기에 국외로 망명하였다가 귀국하지 못하고 해외에서 거주하다가 후에 귀국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 중 독립유공자의 증손자녀 및 고손자녀 중 세대주에게 그 정착 여건과 생활유지 능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착금을 지급할 수 있음	재량규정

III.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26조(국내 정착 지원에 관한 특례)	○	-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이 추계에서는 국가보훈부의 ‘독립유공자 후손확인위원회’를 통하여 독립유공자 후손으로 인정받은 인원을 개정안에 따른 대상자로 적용하여 추계함
 - 국가보훈부에 따르면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상 등록 유족의 대상은 독립유공자의 손자녀까지로, 개정안에 따른 영주귀국 독립유공자의 증손자녀, 고손자녀 현황은 부존재
 - 법무부에서는 자체 심사를 통해 인정된 후손 인원은 개인정보 제공의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제공하지 않고 있어 정확한 영주귀국 증·고손자녀의 인원 파악이 불가함
 - 다만, 법무부에서 자체적으로 독립유공자의 후손 여부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국가보훈부에 후손확인을 의뢰하며, 국가보훈부는 2007년부터 ‘독립유공자 후손확인위원회’를 통하여 후손여부를 확인하고 있음
 - 자료의 한계로 추계기간 동안 사망인원은 없는 것으로 하고, 신규유입 인원만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추계함
- 제정안에 소급 적용에 관한 규정이 없으나, 정착지원 대상을 독립유공자의 증·고손자녀까지 확대하여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해 공헌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제정안의 제안이유를 고려하여, 신규 유입 인원뿐만 아니라 기존 인원 모두를 포함하여 추계함
-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한 개정안의 부칙과 법안 심의기간 및 예산 확보 등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으로 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 개정안에 따라 독립유공자의 증손자녀 및 고손자녀 중 세대주에게 정착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추계 방법은 정착지원금 지원 대상가구수를 추정한 후 가구원수별 정착 지원금 지급단가를 곱하여 산출

- (기존사업 현황) ‘독립유공자 및 유족지원’ 사업의 내역사업인 ‘영주귀국정착금’ 사업에서는 일제강점기에 국외로 망명하였다가 귀국하지 못하고 후에 귀국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독립유공자와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세대주의 국내 정착 지원을 위해 1995년도부터 정착금을 지급하고 있음
- (대상자) 개정안에 따른 정착지원금 지급 대상자는 독립유공자의 증손자녀·고손자녀 중 세대주로서, 고손자녀는 증손자녀가 지원받은 이력이 없어야 대상자가 될 수 있다고 가정하여 이 추계에서는 증손자녀에 한정(증손 모두 고손을 동반하여 귀국하였고, 고손 홀로 귀국한 사례는 없음)
 - 국가보훈부 ‘독립유공자 후손확인위원회’를 통하여 독립유공자 후손으로 인정받은 인원은 2007년부터 2023년까지 증손 509명, 고손 238명으로 총 747명으로 나 타남([표 2])
 - 법무부 제출자료(개인정보 제공의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연령자료 제공하지 않음)에 따르면 연도별 독립유공자 후손 인원(자, 손, 증손, 고손, 내손 이하 모두 포함)은 2014년부터 2023년까지 10년간 총 467명([표 3])으로 매년 평균 47명 의 신규인원이 발생하며, 이중 증손은 [표 4]의 41%에 해당하는 19명으로 예상 되어 신규 편입 증손인원은 매년 19명으로 추정하고, 고손은 [표 4]의 27%에 해 당하는 13명으로 예상되어 신규 편입 고손인원은 매년 13명으로 추정([표 5])

[표 2] 독립유공자 후손 현황: 2007~2023년

(단위: 명)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계
증손	31	98	61	67	46	38	29	19	5	27	4	17	12	17	12	24	2	509
고손	14	17	29	25	34	8	23	15	6	20	2	11	4	8	6	16	0	238

자료: 국가보훈부

[표 3] 연도별 특별귀화 독립유공자 후손 인원 현황: 2014~2023년

(단위: 명)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합계	연평균
인원	44	34	66	42	47	66	37	38	58	35	467	47

자료: 법무부

[표 4] 독립유공자 후손확인위원회 인정 후손 중 증손·고손 비율 현황: 2015~2024년 6월
(단위: 명, %)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6.	합계	비율 (%)
자	0	2	0	1	0	0	0	1	0	0	4	1
손	4	22	6	11	8	10	9	8	1	4	83	27
증손	5	27	4	17	12	17	12	24	2	6	126	41
고손	6	20	2	11	4	8	6	16	0	10	83	27
내손이하	0	1	0	7	1	0	0	2	0	1	12	4
합계	15	72	12	47	25	35	27	51	3	21	308	100

자료: 국가보훈부

[표 5] 독립유공자 증손·고손 수 추정: 2023~2030년

(단위: 명)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증손 누적인원	509	528	547	566	585	604	623	642
고손 누적인원	238	251	264	277	290	303	316	329
합계	747	779	811	843	875	907	939	971

주: 2024년부터는 추정치로서 증손 및 고손이 매년 각각 19명(47명 중 41%), 13명(47명 중 27%)씩 증가한다고 가정하여 추계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단가) 정착지원금은 1인가구 8,900만원, 2~3인가구 1억 2,800만원, 4인 이상 1억 5,300만원으로 추계 기간 동안 동일하게 유지된다고 가정하고, 가구수 비율은 최근 6년간 평균비율을 적용

[표 6] 연도별 정착금 지급단가 현황

(단위: 만원)

가구별 인원구성	1인	2~3인	4인이상
2005.6.1.~2019.12.31.	4,500	5,500	7,000
2020.1.1.~2022.12.31.	5,000	6,000	7,500
2023.1.1.~현재	8,900	12,800	15,300

자료: 국가보훈부

[표 7] 정착지원금 지급 가구수 현황: 2019~2024년 6월

가구	'19	'20	'21	'22	'23	'24. 6.	합계	비율 (%)
세대주인 유족이 1명만 있는 경우	—	—	—	—	2	—	2	—
세대주인 유족 2명 이상 중 가구원 1명만 있는 경우	2	4	2	1	3	1	13	27.7
세대주인 유족 2명 이상 중 가구원이 세대주 포함 2~3명의 경우	6	2	6	6	5	3	28	59.6
세대주인 유족 2명 이상 중 가구원이 세대주 포함 4명 이상의 경우	2	2	1	1	—	—	6	12.8
합계	10	8	9	8	10	4	49	100

주: 1) 세대주인 유족이 1명만 있는 경우는 최근 6년간 2명으로 미미하게 발생하므로 비율 계산에서 제외

2) 비율의 합은 단수조정으로 인해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자료: 국가보훈부

- (소요비용) 대상가구수에 가구원 수 비중, 가구원수별 지급단가를 곱하면
향후 5년간 총 773억원으로 예상

- 추계 결과, 국내 정착금 지급 대상에 독립유공자의 증손자녀 및 고손자녀의 세대주를 추가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681억 4,900만원, 2030년 22억 8,800만원 등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총 773억원으로 추계됨

[표 6] 정착지원금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대상자(A, 가구)		566	19	19	19	19	—
지급단가 (C, 백만원)	1인가구	89	89	89	89	89	—
	2-3인가구	128	128	128	128	128	—
	4인이상	153	153	153	153	153	—
가구수 비중 (B, %)	1인가구	27.7	27.7	27.7	27.7	27.7	—
	2-3인가구	59.6	59.6	59.6	59.6	59.6	—
	4인이상	12.8	12.8	12.8	12.8	12.8	—
소요비용(A x B x C, 백만원)		68,149	2,288	2,288	2,288	2,288	77,300

주: 표의 합계는 단수조정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V. 부대의견

☐ 없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보	과장
행정비용추계과	강아름	김안나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강아름	02-6788-4664	krm7839@nabo.go.kr